

『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
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4년 11월 20일

나. 발 의 자 : 안장환, 윤영철, 김재상, 김정곤, 손홍섭, 허 복
정하영, 정근수, 김상조, 박세진, 안주찬, 한성희,
양진오, 강승수, 박교상, 김인배, 윤종호, 김태근,
임춘구(19명)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12월 18일

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김복자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『지방자치법』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
2014.10.31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2015년 ~
2018년도 구미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
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조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“1,970,000원”을 “2,016,000원”으로 조정(안 제3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승 해

□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지급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조정코자 함.
-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,
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“1,970,000원”을 “2,016,000원”으로 조정하였음.

□ 검토결과

-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『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』로부터 2015년도 구미시의회 의정비를 월정수당 연 2,420만원과 의정활동비 연 1,320만원을 합한 연 3,740만원으로 결정 통보해 오에 따라
- 의정활동비는 조정이 없으며,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별 균분하게 조정코자 하는 것임.
- 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